|  |  |  |
| --- | --- | --- |
| **중대 기술장비 수입 조세정책 관련 목록 및 규정 조정에 관한 통지**재관세[2015]51호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재정청(국)•공업정보화주관부서•국가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재무국, 해관총서의 광둥(廣東)분서 및 각 직속해관, 재정부의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주재 재정감찰요원 사무처 :최근 몇년의 국내 장비제조업 및 그 부대산업의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산업주관부서, 업계협회 및 기업대표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기초위에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국가에너지국은 중대 기술장비 수입 조세정책 관련 목록 및 규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1.<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첨부1 참조) 및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의 수입 핵심부품•원자재 상품 목록(2015년 개정)>(첨부2 참조)를 2016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국내기업이 이 통지 첨부1에 열거된 장비 또는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첨부2에 열거된 상품의 수입이 필요한 경우 수입관세 및 수입단계 증치세를 면제한다. 첨부1 및 첨부2에 마감 연도가 명시되었을 경우 관련 장비•제품•부품•원자재의 세금면제 집행기한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내 산업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축류(軸流)형 수력발전 유닛 등 장비의 세금면제 정책을 취소하며 따라서 관련 장비 및 제품 생산제조기업의 2016연도 사전할당 면세 수입한도액을 취소한다.2.<수입 비(非)면세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첨부3 참조)을 2016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2016년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 비준을 득한 <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1997]37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또는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수입 조세특혜 정책을 적용받는 다음 프로젝트와 기업이 첨부3에 열거된 자사용 설비와 계약에 따라 상기 설비와 같이 수입되는 기술 및 유닛품•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절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과세한다.(1)국가가 발전을 격려하는 국내투자 프로젝트 및 외상투자 트로젝트; (2)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조직의 대출금 이용 프로젝트; (3)외국인으로부터 가격채산 없이 수입하는 설비를 제공받는 가공무역기업;(4)중서부지역의 외상투자 우위산업 프로젝트;(5)<외상투자 진일보 격려를 위한 수입 조세정책에 관한 해관총서의 통지>(서세[1999]791호)에 규정한 외상투자기업 및 외상투자기업이 설립한 연구개발센테가 자기보유 자금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량 프로젝트.<수입 비(非)면세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에 의한 조정에 앞서 이미 비준을 득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이전(12월 31일 포함)에 비준을 득한 상기 프로젝트와 기업이 2016년 6월 30일 이전(6월 30일 포함)에 수입하는 설비는 계속해서 <중대 기술장비 수입 조세정책 조정에 관한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국가에너지국의 통지>(재관세[2014]2호)의 첨부4 및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의 <국내투자 프로젝트의 비(非)면세 수입상품 목록> 조정 공고>(2012년 제83호)에 따라 집행한다.2016년 7월 1일부터 상기 프로젝트와 기업이 <수입 비(非)면세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에 열거된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일절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과세한다. 정책 집행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젝트와 기업의 상품 수입에 대해 <수입 비(非)면세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 및 <국내투자 프로젝트의 비(非)면세 수입상품 목록(2012년 개정)>에 따른 세금 심사•과세•면제가 필요한 경우 <수입 비(非)면세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 및 <국내투자 프로젝트의 비(非)면세 수입상품 목록(2012년 개정)>에 열거된 상품명이 동일하거나 <수입 비(非)면세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에만 열거된 상품은 일절 <수입 비(非)면세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에 열거된 상품 및 그 기술규격지표를 기준으로 한다.3. <중대 기술장비 수입 조세정책 조정에 관한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해관총서•국가세무국•국가에너지국의 통지>(재관세[2014]2호) 첨부1 <중대 기술장비 수입 조세정책 규정>의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수입 조세특혜 정책의 적용을 새로 신청하는 기업의 면세자격 인정 업무는 연 1회씩 실시한다. 조세특혜 정책의 적용을 새로 신청하는 제조기업은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류(요구사항은 첨부1 참조)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의 수입 조세특혜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 수요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지방 제조기업은 기업소재지 성급 공업및정보화 주관부서를 거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성급 공업및정보화 주관부서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매년 12월 5일 이전에 공업정보화부에 제출하며; 중앙기업은 공업정보화부에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한다. 도시궤도교통 중대 기술장비 자기화 의탁 프로젝트 추진업체는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가발전개혁위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의 수입 조세특혜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 수요를 보고하여야 한다. 원자력 발전 중대 기술장비 자기화 의탁 프로젝트 추진업체는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가에너지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의 수입 조세특혜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 수요를 보고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제7조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에너지국은 기업의 신청서류를 받은 후 신청서류의 규범성, 온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적시에 보정이 필요한 서류를 기업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기업은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 또는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부서는 그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제8조 공업정보화부는 제조업체의 신청서류를 받은 후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국과 공동으로(에너지 장비 제조업체의 자격 인정 시 국가에너지국 참여 필요) 업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 규정의 관련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기업 자격 인정을 실시하고 기업의 수입 수요를 취합한다. 국가발전개혁위•국가에너지국은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과 공동으로 관련 업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자가 담당하는 도시궤도교통 및 원자력 발전 중대 기술장비 자기화 의탁 프로젝트 추진업체의 면세자격 인정을 실시하고 프로젝트 추진업체의 수입 수요를 심사 및 확정한다. 공업정보화부•국가발전개혁위•국가에너지국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 면세자격 인정 결과 및 관련 요소 확정 결과를 재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제9조 재정부는 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과 공동으로 기업 면세자격 인정 및 취합한 기업의 수입 수요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 이전에 면세자격을 새로 획득한 기업의 명단을 확정하고 기업의 수입 수요를 면세 수입한도액으로 확정한다. 면세자격을 이미 보유한 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정책집행 상황에 대한 실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연간 수입 조세 지출규모(즉 연간 세금 감면규모)' 계획의 기본구조 내에서 기업의 설계•연구개발•제조능력, 중대 기술장비의 선진성, 면세 한도액 집행율 및 정책 집행효과 등 요인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면세 수입한도액을 확정한다.'4. <중대 기술장비 수입 조세정책 조정에 관한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해관총서•국가세무국•국가에너지국의 통지>(재관세[2014]2호)의 첨부2, 첨부3, 첨부4는 2016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 첨부 : 1.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2.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의 수입 핵심부품•원자재 상품 목록(2015년 개정)3. 수입 비(非)면세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에너지국2015년 12월 1일 |  |  **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及规定的通知**财关税〔2015〕51号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国家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海关总署广东分署、各直属海关，财政部驻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监察专员办事处：根据近年来国内装备制造业及其配套产业的发展情况，在广泛听取产业主管部门、行业协会及企业代表等方面意见的基础上，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国家能源局决定对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和规定部分条款进行修订。现通知如下：一、《国家支持发展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5年修订）》（见附件1）和《重大技术装备和产品进口关键零部件及原材料商品目录（2015年修订）》（见附件2）自2016年1月1日起执行，符合规定条件的国内企业为生产本通知附件1所列装备或产品而确有必要进口附件2所列商品，免征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附件1、2中列明执行年限的，有关装备、产品、零部件、原材料免税执行期限截至到该年度12月31日。根据国内产业发展情况，自2016年1月1日起，取消轴流式水电机组等装备的免税政策，生产制造相关装备和产品的企业2016年度预拨免税进口额度相应取消。二、《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5年修订）》（见附件3）自2016年1月1日起执行。对2016年1月1日以后（含1月1日）批准的按照或比照《国务院关于调整进口设备税收政策的通知》（国发〔1997〕37号）有关规定享受进口税收优惠政策的下列项目和企业，进口附件3所列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上述设备进口的技术及配套件、备件，一律照章征收进口税收：（一）国家鼓励发展的国内投资项目和外商投资项目；（二）外国政府贷款和国际金融组织贷款项目；（三）由外商提供不作价进口设备的加工贸易企业；（四）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项目；（五） 《海关总署关于进一步鼓励外商投资有关进口税收政策的通知》（署税〔1999〕791号）规定的外商投资企业和外商投资设立的研究中心利用自有资金进行技术改造项目。为保证《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5年修订）》调整前已批准的上述项目顺利实施，对2015年12月31日前（含12月31日）批准的上述项目和企业在2016年6月30日前（含6月30日）进口设备，继续按照《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 国家能源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的通知》（财关税〔2014〕2号）附件4和《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的公告》（2012年第83号）执行。自2016年7月1日起对上述项目和企业进口《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5年修订）》中所列设备，一律照章征收进口税收。为保证政策执行的统一性，对有关项目和企业进口商品需对照《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5年修订）》和《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2012年调整）》审核征免税的，《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5年修订）》与《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2012年调整）》所列商品名称相同，或仅在《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5年修订）》中列名的商品，一律以《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5年修订）》所列商品及其技术规格指标为准。三、将《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国家能源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的通知》（财关税〔2014〕2号）附件1《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规定》中第六、七、八、九条分别修改为：“第六条 对新申请享受进口税收优惠政策的企业免税资格认定工作每年组织一次。新申请享受政策的制造企业应在每年11月1日至11月30日提交申请文件（要求见附1），报送下一年度申请进口税收优惠享受政策的进口需求。其中，地方制造企业通过企业所在地省级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转报申请文件，由省级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汇总后在每年12月5日前将申请文件上报工业和信息化部；中央企业直接向工业和信息化部提交申请文件。承担城市轨道交通重大技术装备自主化依托项目的业主应在每年11月1日至11月30日向国家发展改革委提交申请文件，报送当年度申请享受进口税收优惠政策的进口需求。承担核电重大技术装备自主化依托项目的业主应在每年11月1日至11月30日向国家能源局提交申请文件，报送下一年度申请享受政策的进口需求。逾期不予受理”。“第七条 工业和信息化部、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收到企业的申请文件后，应当审查申请文件是否规范、完整，材料是否有效。企业提交的申请文件符合规定的，有关部门应当予以受理。企业提交的申请文件不符合规定的，有关部门应当及时告知企业需要补正的材料，企业应在5个工作日内提交补正材料。企业不能按照规定提交申请文件或补正材料的，有关部门不予受理”。“第八条 工业和信息化部受理制造企业申请文件后，应会同财政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对能源装备制造企业资格的认定还应会同国家能源局）组织相关行业专家，根据本规定有关要求，对企业资格进行认定，并汇总企业进口需求。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应会同财政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组织相关行业专家，分别负责对城市轨道交通、核电领域承担重大技术装备自主化依托项目的业主免税资格进行认定，并核定项目业主进口需求。工业和信息化部、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应在每年12月31日前将企业免税资格认定及相关因素核定结果报送财政部，逾期不予受理”。“第九条 财政部会同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根据有关部门对企业免税资格认定和汇总的企业进口需求，每年1月31日前明确新获得免税资格的企业名单，并将企业进口需求直接确定为免税进口额度。根据对已获得免税资格企业上一年度政策执行情况的绩效评估，在年度进口税收税式支出规模(即年度减免税规模)安排的框架内，依据企业设计研发制造能力、重大技术装备技术先进性、免税额度执行率和政策执行效果等因素，确定企业下一年度免税进口额度”。四、自2016年1月1日起，《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 国家能源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的通知》（财关税〔2014〕2号）附件2、3、4予以废止。附件：1.国家支持发展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5年修订）　2.重大技术装备和产品进口关键零部件、原材料商品目录（2015年修订）3.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5年修订）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 国家能源局2015年12月1日　　  |